

사회의 저명인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
그 시대의 「상대적 주요인물」로 되지 아니한다.

함부르크고등법원 1990. 8. 1. 결정

-3W 83/90 사건-

적용법조

독일 문화저작권법(KUG) 제 22, 23 조, 독일 민사소송법 제 91 조의 a

결정요지

1. 대중앞에서 사회의 저명인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시대의 「상대적 주요인물」로 되지 아니한다.
2. 사진기자가 누구를 적을 것인가 및 그 찍은 사진을 공표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사진기자 스스로의 임무이다.
3. 사진기자의 촬영대상이 된 사람은 그 사진기자가 혹시 잘못 상상하여 그 결과 그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시정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.

판결이유

1) 이 사건 신청인은 테니스 스타인 Boris Becker 와 함께 1990. 4. 18. 단 한번 대중 앞에 나타났다. 그리고 그 때에 이 사진들이 촬영되었고, 신청인의 동의없이 촬영된 위 사진의 공표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신청인의 의도였다.

당재판부는, 1 심의 지방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7. 7. 13.자의 판결(GRUR 90, 35)에서 스타와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난 젊은 부인은 어떠한 요건 하에서 그 시대의 「상대적인 주요인물」로 되는 것이고, 따라서 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판시한 바가 있었다. 이 에 의 하면, 공중 앞에서 스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상대적 주요인물로 되기에는 부족한 것 이 다. 즉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보다 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.

2) 이 사건에 있어서, 신청인이 Boris Becker 와 함께 대중 앞에 폼내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, 또는 신청인이 사후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피신청인이 소명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. 이 점은 1 심 법원도 역시 적절히 간파하였다. 특히 제출된 사진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위와 같은 점들을 인정할 단서들을 찾을 수 없다. 당재판부가 하였던 앞서 본 사건에 있어서는 사정이 이와는 좀 다르다. 즉 위 사건에 있어서는 젊은 부민이 스타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인상을 그 부민 스스로가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. 그리하여 피신청인은 이

사건과 앞에서 본 사건이 서로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.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오로지 스포츠잡지의 부탁을 받고 Boris Hocker 의 스냅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의도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. 이와 함께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으며, 그러다가 그와 어떤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따름이었다. 바로 이 순간에 여기에서 문제로 된 사진들이 촬영된 것이었다. 그러나 위 촬영 당시 신청인이 사진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Boris Becker 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기자에게 명시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로써 간접적으로 그 시대의 상대적인 주요인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. 즉 사건기자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및 그 찍은 사진을 공표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사진기자 스스로의 임무인 것이다.

결국, 신청인이 사진기자가 그를 촬영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에게 그 사진을 공표하는 데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.